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40

발의연월일: 2022. 10. 5.

발 의 자:김미애·태영호·조수진

김학용 • 황보승희 • 김선교

김용판 · 이채익 · 박정하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을 당하던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재판 과정에서 보복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응급 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으나, 스토킹행위자 에 대한 위치추적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더욱이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은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및 제9조).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고 함(제5조 및 제20조의2).

또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으로써 추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로 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토킹행위자의 위치확인 장치 부착

제5조제5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10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긴급응급조치의 불이행죄)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

3호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할 수없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 2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	
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	
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
	<u>인 장치 부착</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	⑤ <u>37</u>]
을 초과할 수 없다.	월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치) ①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 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 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④ 법원은 <u>제1항제4호</u>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 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 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제4호 및 제5</u>
<u>\$\bar{\sigma}\$</u>
1. • 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기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u>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u>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수 있다.

②·③ (생 략)

-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생략)
 -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u>제9</u> <u>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u>의 잠 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u>설>

<u>제1항제2호, 제3</u> 호 및 제5호
·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사법경찰관
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스토킹범죄)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u>제9</u>
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
<u>ō</u>
제20조의2(긴급응급조치의 불이
행죄)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제21조(과태료) <삭 제> 없이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 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이 부과 · 징수한다.

또는 제3호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검 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 벌할 수 없다.

_		
(\mathfrak{O})	(현행과	가으`
(Δ)	(234	10 0

3	제2형	<u>당에</u>	 	